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. 24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. 24

(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 길 중
- 나.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(대부료등의 납기)에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의(2002. 10. 22)에서 개정키로 심의, 의결된 사항을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%의 이자를 부어 연4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에 신설
(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조례안에 별다른 의견 없음.
- 본 개정안의 범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8%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